

2026년도 기술경영촉진 신규과제 공고 - IP스타과학자 지원형 -

2026년도 「기술경영촉진(IP스타과학자 지원형)」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19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 김병국

【 (요약) [기술경영촉진(IP스타과학자 지원형)] 신규과제 공고 개요 】

| 세부사업명 | 내역사업명 (내내역사업명) | 총 연구기간 | 당해 연구기간 | 당해 지원규모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| 1단계 연구기간 | | |
| 산학연협력 활성화지원 | 기술경영촉진 (IP스타과학자 지원형) | '26.4.~'29.12. (3년 9개월) | '26.4.~'26.12. (9개월) | 37.5억원 (50개 과제, 과제별 1억원 x 9/12개월) |
| | | '26.4.~'27.12 (1년 9개월) | | |

|| 목 차 |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사업 개요 | 1 |
| 2. 관련 규정 | 1 |
| 3. 지원 내용 | 1 |
| 4. 신청 자격 및 제한 | 7 |
| 5. 추진 체계 | 7 |
| 6. 단계평가 절차 및 기준 | 10 |
| 7. 사업추진 일정(안) | 13 |
| 8. 신청방법 | 13 |
| 9. 신청 안내 및 문의처 | 14 |
| 10. 기타 유의사항 | 16 |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우수 연구성과(또는 IP)를 보유한 연구자 주도의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

□ 사업 내용

- (중점 지원방향) 우수 연구자와 민간 사업화전문기관이 기술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성과 극대화 지원
- (주요 지원내용) 기술사업화 혁신 주체(연구자-민간사업화전문기관-수요기업) 간 협업을 통해 ①IP고도화 · 기획을 통한 강한 IP창출, ②사업화 전략 기반 기술마케팅·기술중개 등 기술사업화 활동 수행, ③우수기술*의 기술이전, 창업 등 성과 창출
* 출원 예정 및 기 출원·등록된 IP 대상
※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의 협력(IP-R&D 전략, BM 고도화, IP-포트폴리오 구축, 기술이전, 창업법인 설립, 초기 투자 등)을 통한 성과 창출

2. 관련 규정
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3(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)
-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)

3. 지원 내용

□ 지원 기간 및 규모

- (당해 지원기간) '26. 4. 1. ~ '26. 12. 31. (9개월)
※ 총 연구기간 : '26. 4. 1. ~ '29. 12. 31. (총 3년 9개월)
- ('26년 지원 규모/예산) 50명, 총 37.5억원 지원(과제별 연 1억원, 9개월)

< 사업 단계별 지원 개요 >

| 구분 | 1단계('26.4월 ~ '27.12월, 1년 9개월) | 2단계('28.1월 ~ '29.12월, 2년) |
|----------|--|--|
| 목적 |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사업화 유망 우수기술·IP 고도화 및 기획, 창업 지원 등 | 후속지원을 통한 이전 기술의 스케일업, 시장검증 및 후속 투자유치 등 사업화 성과 확대 |
| 지원 예산 | ▶ 과제당 연 1억원 ※ '26년은 0.75억원 9개월 지원 | ▶ 과제당 연 4억원 ※ 수요기업 공동연구 참여시 관련 법·규정에 따른 민간지분 매칭 |
| 지원 과제 수 | 50개 과제 | 25개 과제 |
| 목표 (산출물) | [기술이전형] 기술이전 [창업형] 창업기업 설립 및 창업투자 유치 | [기술이전형] 추가 기술료(마일스톤) 등 [창업형] 기술이전·공동연구·매출 등 |
| 비고 | - | 1단계 수행과제 중 50% 내외 2단계 지원(21 경쟁) |

※ 지원예산 및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□ 지원 내용

- (IP고도화·기획) 연구자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*과 협력하여 IP 컨설팅 및 재창출을 통한 추가 IP 확보,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지원
 - * 기술거래기관, 사업화전문회사, 엑셀러레이터, 특허법인, 벤처캐피털, 전문 연구사업자 등(NTB기술은행 내 NTB네트워크 참고)
 - ※ 국내외 특허출원·등록, 특허전략 설계 등 지원
- (사업화 지원) 사업화 전략 기반 기술마케팅을 통한 수요기업 발굴, 이전 기술의 스케일업, 상용화 검증 및 후속투자유치 지원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
 - ※ BM 수립, 수요기업 발굴·매칭, 기술가치평가, 기술이전 협상 등 사업화 지원
- (협업성과 창출) 기술사업화 혁신 주체(연구자-민간 사업화전문기관-수요기업) 간 협업을 통해 우수기술의 기술이전, 창업 등 성과 창출
- (단계별 지원) '26년도부터 후속지원 단계(2단계) 신설에 따라 경쟁형 평가를 통한 후속지원 대상 선별(상위 50%)

- (1단계, 1년 9개월)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사업화 유망 우수기술·IP 고도화 및 기획, 기술이전 및 창업 등

| 구분 | 사업 내용 |
|-------|--|
| 기술이전형 |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IP 강화 전략 수립 → 수요기업 발굴 → 기술이전 체결 |
| 창업형 |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공공 IP 기반 창업 전략 수립 → 수요기업 발굴 → 공공연구자 창업기업 설립 → 창업 투자자금 유치 |

- (2단계, 2년) 후속지원*을 통한 이전 기술의 스케일업, 시장검증 및 후속 투자유치 등 사업화 성과 확대

* 1단계 완료 연구자 중 50% 내외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

※ 2단계 진입 시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Track(기술이전형/창업형) 변경 가능

| 구분 | 사업 내용 |
|-------|---|
| 기술이전형 | IP-R&D전략 고도화, 기술이전 기업과의 공동연구(추가 R&D를 통한 기술성숙도 제고 및 시장검증 등) 및 후속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성과 확대 추진 ※ 1단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마일스톤, 경상기술료 등 기술이전 성과 확대 및 잠재 수요기업 추가 발굴, 기술마케팅 강화 |
| 창업형 | 창업기업의 창업전략에 따른 수요기업*과의 공동연구(추가 R&D를 통한 기술성숙도 제고 및 시장검증)를 통해 BM고도화, 기술이전, PoC, 시작품 개발 및 인·허가, 시드투자유치 등 추진 ※ (1단계) 주관기관인 대학·출연(연) 연구자가 창업 → (2단계) 창업기업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수행 * 창업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협력 또는 구매 추진 |

< IP스타과학자 지원형 프로젝트 수행 절차 예시 >

| 구분 | 1단계 | 구분 | 2단계(후속지원)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연구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IP 고도화(추가 IP확보) · 기술자문 활동 수행 · 연구자 창업 | 연구자/ 창업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후속 기술이전 및 수요기술 고도화 (POC, 현장적용 기술지도) · 후속투자 유치 |
| <협력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· 수요기반 상용화 타당성 검증 · 기술이전, 창업 등 ·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| <협력/ 공동·위탁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요기술 공동연구 및 시장검증 ·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사업화 지원 |
| 민간사업화 전문기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· 수요기업 발굴 및 BM수립 · 계약조건 협상, 기술가치평가 | 민간사업화 전문기관/ 수요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MVP 시장 진입 가능성 탐색 · 시작품 제작, 실증 및 인허가 · 후속투자유치 지원 |

□ 지원대상 및 요건

- (지원대상) 우수 IP 보유 대학·출연(연) 연구자
- (지원단위) 유망기술(IP) 보유 주관기관(연구책임자 : 연구자) 단독과제
 - 1단계는 연구자 단독과제로 수행, 2단계 진입 시 수요기업 포함
- (지원요건)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방안 및 성과배분 계획 명확히 제시
 - ※ 연구책임자는 1단계 수행 시 협업대상으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필수 구성

| 구분 | | 지원 요건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1 단 계 | 구성 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(협업대상 사전매칭·제시) 과제 신청 시, 민간 사업화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필수■ (협업내용 구성) 연구개발계획서에 주요 과업별 민간 사업화전문기관과 <u>협력연구 계획</u> 및 <u>성과배분 계획</u>* 등 제시 필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기술이전 성공보수 요율, 지급계획 및 중개계약 조건 등 |
| | 참고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민간 사업화전문기관 활용 예산편성 : 연구활동비(외부전문기술활용비)에서 편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※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1단계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제한(직접비 40% 이내) 미적용■ 민간 사업화전문기관 활용 계약방법 : 주관기관 내규 준용하되, 수의계약 등 가능 |
| 2 단 계 | 구성 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연구책임자는 협업대상으로 수요기업 필수 구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(협업 내용) 주관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요기업 Needs 달성을 위한 시작품 제작, 실증·실용화 후속 연구, 수요기업 기술 평가 등※ 수요기업 요건 : 연구개발기능이 있는 기업(기업부설 연구소 등 연구인력 보유기업)에 한정 |
| | 참고 사항 |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참여(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용역으로 참여) |

4. 신청 자격 및 제한

□ 공통 신청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및 연구자
- 사업수행 지원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과제

□ 주관 · 공동 ·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
 - 수요기업*은 2단계 협약 시 증명서(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전담부서)를 제출하여야 함
- 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(대학 실험실창업 기업, 연구원 창업기업, 연구소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포함)

< 참고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(정의) >

-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 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 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 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 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 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< 참고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 >

-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24. 2. 6.>
 -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 - 3.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고지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 <개정 2024. 2. 6.>
 - 1. 주관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- 2. 공동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- 3.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- a. 주관연구개발기관 : 주관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
 - b. 공동연구개발기관 : 주관연구개발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(수요기업 등)
 - c. 위탁연구개발기관 : 주관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)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(제품, 시설·장비

논문, 특허 등)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< 참고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 >
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(이하 "특정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3. 11., 2016. 3. 22., 2017. 7. 26., 2025. 1. 31. >

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2.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의2. 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
4.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6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
□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- 단 기업의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
□ 신청제한 사항

- (참여제한 중인 자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.
단,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- (중복신청 제한) 연구자는 연구책임자(주관/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)로
본 사업* 기준 1개의 연구개발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

* IP스타과학자 지원형 사업에 기 선정된('24년, '25년)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

-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 공동연구개발 기관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까지 평가에서 제외
- (2단계 수행시) **과제구성 제한**)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 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
 - 주관, 공동,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동일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
 -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가 됨(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)
 - 다른 기관의 기준은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
 - ※ 동일기관 여부: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(협약 시, 법인인증서 사용)
 - ※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,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,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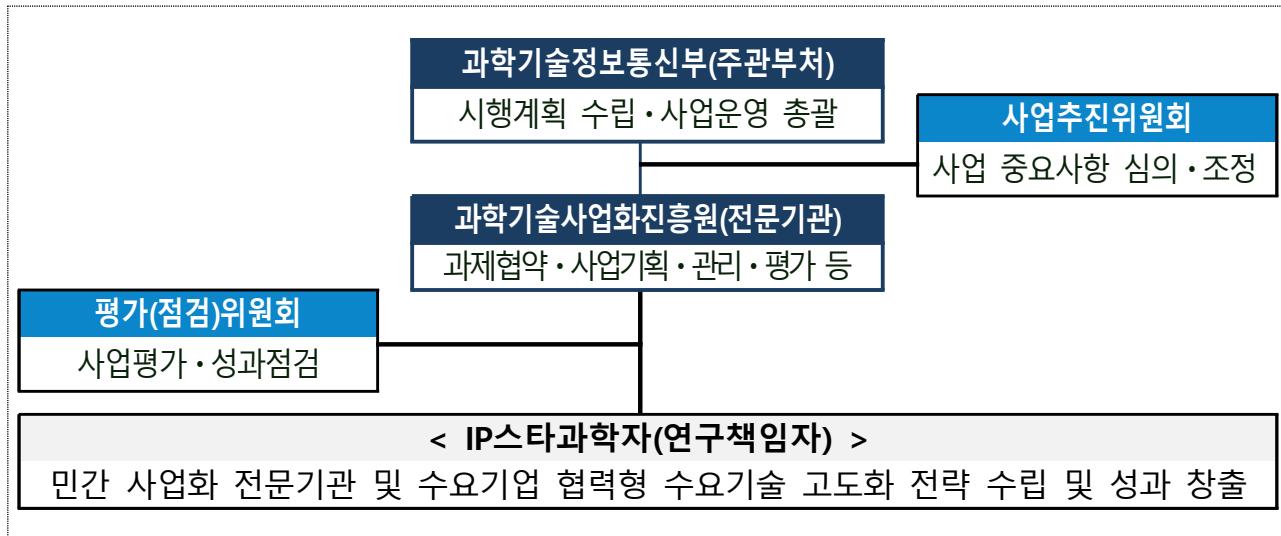
< 참고 : 연구개발기관 구분별 과제 참여 방법(사례) >

| 연구개발기관 구분 | 사례1 | 사례2 | 사례3 | 사례4 | 사례5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주관연구개발기관 | A기관 | A기관 | A기관 | A기관 | A기관 |
| 공동연구개발기관1 | B기관 | A기관 | B기관 | B기관 | B기관 |
| | C기관 | B기관 | B기관 | C기관 | C기관 |
| | D기관 | D기관 | C기관 | A기관 | B기관 |
|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| 가능 | 불가능 | 불가능 | 불가능 | 불가능 |

- (2단계 수행시) **위탁과제 구성 제한**)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 주제의 위탁과제 금지
 -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에서 운영(시작품 제작, 시험평가 등은 연구용역으로 추진 가능)

5. 추진 체계

[주관부처] 과학기술정보통신부 [전문기관]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[주관기관] 연구자



수행 주체별 역할

| 구 분 | 주요 역할 및 기능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사업총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총괄 |
|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(전문기관) | 사업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협약 체결■ 사업 운영 및 사업비 교부·관리■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■ 주관기관 사업 수행현황·성과 점검 및 관리 |
| 사업추진위원회 | 심의·조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사업추진 전반에 걸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 |
| 전문가 평가위원회 | 평가, 사전심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지원 과제 평가, 주관기관 선정 및 사업비 배분■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|
| 주관기관(대학·출연연) | 사업수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기술사업화 협력·성과 배분 계획 수립■ 사업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추진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수요기술 고도화(이전기술의 스케일업 및 수요 기술 시장검증 등)- 창업기업 설립 및 투자유치 |
|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관(수요기업*)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수요기술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및 시장검증■ 최적화 MVP 시장 진입 가능성 탐색 |

| 구 분 | 주요 역할 및 기능 |
|--|--|
| *2단계부터 참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제적 성과 창출 |
| 위탁 또는 참여기관 (민간 사업화 전문기관*) *2단계는 위탁으로도 참여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구자와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고도화 지원 ■ 창업 및 후속투자유치 지원 |

6. 평가 절차 및 기준

□ 선정절차

- (선정 절차) 사전검토(전문기관) → 서면평가(1단계) → 대면평가(2단계)
→ 사업추진위원회 심의·확정(3단계) 순으로 진행

※ 접수경쟁률 3배수 미만 시 서면평가 생략 가능

< 선정평가 절차(안) >



- (1단계 서면평가) 사업신청서, 신청요건(사업공고문 기준) 등 서류검토
※ 최종 선정과제수의 2배수 내외로 대면(발표)평가 대상 선정
- (대면평가) 연구책임자 연구계획 발표 및 질의·응답 등
※ 최종선정 지원대상 과제를 50개 도출하고, 10% 규모(약 3개) 수준으로 후보과제 추가 도출 실시
- (최종선정) 평가결과 최종심의 및 확정 등
- (선정기준) 선정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및 순위 결정, 사업추진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, 예산 등 최종 확정
- (평가위원회 구성) 기술(IP)전문가, 사업화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운영

□ 평가지표

- (평가기준) 추진역량(30점), 지원필요성(30점), 계획적절성(20점), 시장경쟁력(10점), 파급효과(10점) 등 종합 검토

< IP스타과학자 지원형-선정평가 지표(안) >

| 평가항목 | 평가내용 | 배점 |
|----------|--|-----|
| 추진 역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보유 IP의 기술적 역량 및 우수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업화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- 보유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 | 30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사업화 참여 주체의 역량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의지 및 성공 경험- 연구자의 민간 전문조직과의 협력 경험- 참여 민간 전문기관의 적절성 | |
| 지원 필요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중대형 기술이전 성과 창출 가능성■ 지원기술의 완성도■ 지원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 | 30 |
| 사업추진 적절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의 적절성 | 20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기술사업화 추진 체계의 적절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협업 주체 간 주요 과업별 역할 분담의 적절성- 기술료 성과 발생에 따른 민간 전문기관과의 성과 배분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|
| 시장경쟁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경쟁 기술 대비 비교 우위 여부■ 타겟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시장 성장 가능성 | 10 |
| 파급효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사업화 성공 시 경제적·사회적 파급효과 | 10 |
| | 계 | 100 |

※ 상기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변동될 수 있음

□ 성과관리

- 성과목표·지표를 과제별 핵심 성과목표·지표로 관리
- 과제별 개별 성과목표·지표는 별도 제시 및 관리
- IRIS(NTIS) 기반 성과관리
 - 사업점검 및 평가시 IRIS(NTIS)에 입력된 연구성과만을 반영

※ IRIS(NTIS) 입력되지 않는 성과(예, 인프라 구축, Scale up, 수요기업 요구사항 반영 등)는 관련 증빙 및 수요기업 의사 확인 등을 통해 성과 반영·인정

○ 성과 기여율 및 사사(Acknowledgemen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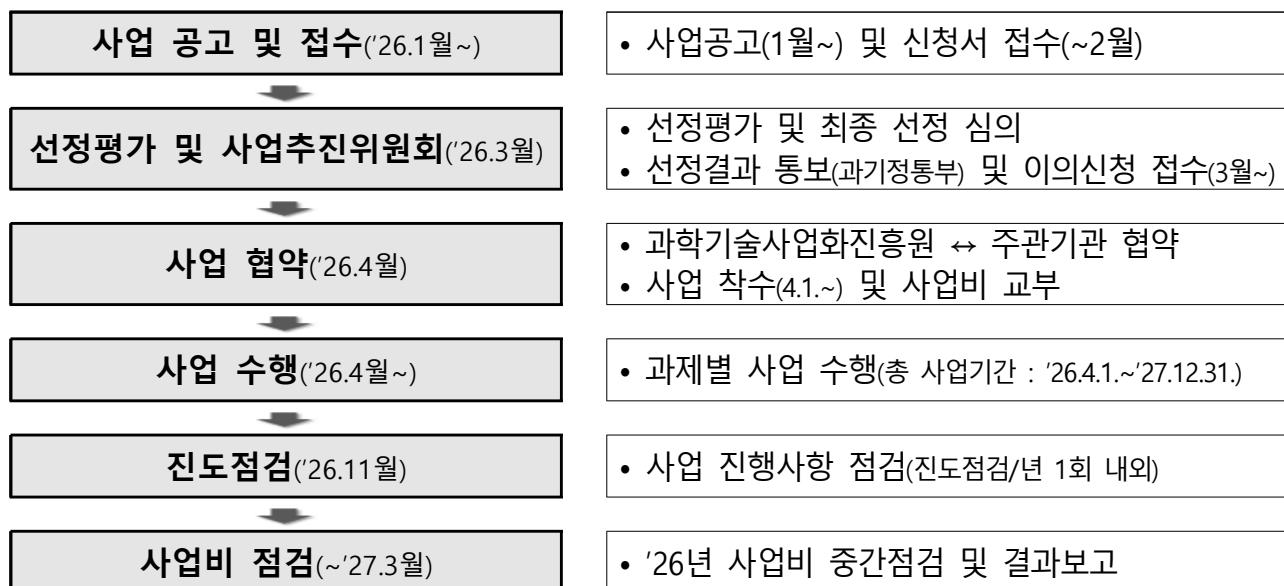
- (기여율) 최소 20% 이상 반영
- (사사, Acknowledgement) 각 성과별 지원 사업(사사) 표기

[‘IP스타과학자 지원형’ 사업 사사(acknowledgement)]

국문: 이 성과는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재원으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(과제번호).

영문: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gency for R&D Outcomes(COMPA)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(Ministry of Science and ICT) (과제번호).

7. 사업추진 일정(안)



※ 상기 사업추진 일정·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8. 신청방법

신청기간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|--|
| 사업 공고기간 | 2026.1.19.(월) ~ 2026.2.24.(화) (37일 공고) |
|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| 2026.2.9.(월) 09:00 ~ 2026.2.24.(화) 14:00 (16일) |
| 주관연구기관 검토/승인기간 | 2026.2.9.(월) 09:00 ~ 2026.2.24.(화) 14:00 (16일) |
| 신청 절차 | 주관연구책임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 |

※ 연구책임자는 사업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록완료 & 주관연구기관 검토/승인을 풀히 완료해야 동 사업 신청 최종 완료 (신청기간 이후 제출 건은 접수 처리 불가)

□ 신청절차

-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입력정보 작성,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必

▶ **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**

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제출서류 양식의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 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 필수

- ② (주관연구개발기관)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·승인을 완료하여야 함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 필수

□ 신청제출 및 온라인 입력

- (IRIS 온라인 입력) 기본정보, 과제요약정보, 연구기관·연구원 정보(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), 연구비 내역, 주요 연구수행실적(수행완료 과제, 수행(신청) 중 과제) 등 정보 입력

- (제출서류) 연구개발계획서, 별첨자료 및 관련증빙(필요시)

※ 필수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.

※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

9. 신청안내 및 문의처

□ 주요사항 안내

| 구분 | 주요사항 안내 |
|--------------|--|
| 사업신청 제한사항 | ■ 제출마감일 기준,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주관기관(대표자) 또는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시 지원 제외 대상 |

| | |
|---------------|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단계신청 시, 제출된 단계보고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, 거짓인 경우 지원 제외 |
| 사업신청 미적용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3책 5공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 |
| 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 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(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(https://msit.go.kr) → 소식 → 사업공고 -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compare.kr/)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■ 마감 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s://www.iris.go.kr)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 불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([제출] 버튼 클릭)되어야 함 ■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,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(소속기관에 문의) ■ 접수 완료 후 입력 정보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해당 기간 내에 접수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, 별도 구제 절차 없음 ■ 등록 완료된 단계보고서는 수정 불가하므로, 작성·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|

□ 연구개발비 편성 안내

| 구분 | 연구개발비 편성 안내 |
|----------|---|
| 공통 규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과제 신청, 선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준용 ■ 사업신청·협약·성과관리 등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s://www.iris.go.kr) 운영 ■ 사업비 지급 및 관리는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(통합이지바로) 운영 |
| 1 단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연구활동비) 민간 전문기관 활용 비용은 외부전문기술활용비 등 항목으로 필수 계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민간 전문기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제한(직접비 40% 이내) 미적용 ■ (연구시설·장비비, 연구수당) 계상 불가 항목에 해당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간접비) 특허출원(등록) 관련 비용만 집행 가능하며, 기관 간접비 고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허출원(등록) 예산편성은 [각 연차별 특허 목표 건수×예상단가]로 산출하여 계상 - 대학·출연연의 TLO 등 업무지원* 예산편성 필요시, 직접비의 5% 이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※ 민간 전문기관 발굴·용역계약 체결, 연구 행정·연구비 관리 등 대학·출연연 TLO 등의 업무지원 과업 |
| 2 단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활용 비용은 위탁연구개발비 또는 연구활동비(외부전문기술 활용비) 항목으로 계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간접비) 직접비의 10% 이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허출원(등록) 관련 비용 집행을 우선으로 하며, 필요시 대학·산학협력단(TLO) 업무지원*용도로 사용 |
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<p>*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발굴·용역계약 체결, 연구 행정·연구비 관리 등 대학 산학 협력단(TLO 등)의 업무지원 과업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기 관 부 담 연 구 개 발 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소·중견·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·중견·대기업에 대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• 중소기업인 경우</td> <td>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</td> </tr> <tr> <td>• 중견기업인 경우</td> <td>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</td> <td>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• 중소기업인 경우</td> <td>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• 중견기업인 경우</td> <td>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% 이상</td> </tr> <tr> <td>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</td> <td>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※ 수요기업 공동연구 시 연구개발비 지원 및 현금부담 비율 기준에 따른 민간부담금 매칭</p> | • 중소기업인 경우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 | • 중견기업인 경우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 | 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 | • 중소기업인 경우 |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 | • 중견기업인 경우 |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% 이상 | 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 |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% 이상 |
| • 중소기업인 경우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• 중견기업인 경우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• 중소기업인 경우 |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• 중견기업인 경우 |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% 이상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 |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% 이상 | | | | | | | | | | | | |

문의처

| 구분 | 이름 | 전화번호 | 이메일 |
|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IRIS 등록 문의 | IRIS 콜센터 | 1877-2041 | - |
| ※ 주관연구기관 승인 문의는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 기관총괄담당자 개별 문의 | | | |
| 사업 문의 | 신청관련 문의 | 02-736-9044 | tmc@compa.re.kr |
| | 사업내용 문의 | 02-736-9028 | |

10. 기타 유의사항

특수관계자 참여에 관한 사항

- 특수관계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등)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
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

□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
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(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)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
< 참고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(연구노트의 작성) >

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(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~ 중략 ~ 인문.사회 분야, 인력양성,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(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)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.

□ [인체유래물 이용 시]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의무화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- 각 소속기관(대학 등)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
 - IRB 심의결과 제출·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(IRB 포함)에서 담당
- ※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(심의 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)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
-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에 확인 (* 문의처 : 국가생명윤리정책원(02-737-8970~1))

* **인간대상연구**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,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,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(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)

□ [인체유래물 이용 시]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

-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*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(질병관리청 국립 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(분양대표전화 1661-9070))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.

* 인체유래물 : 혈청, 혈장, 소변, 혈액유래 DNA, LCL, LCL유래 DNA 등

□ [LMO 이용 시]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

-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.
- 시험·연구용 LMO 정보시스템(<https://www.lmosafety.or.kr/mps>) 확인

□ [해당시] 생명연구자원(소재+데이터) 기탁·등록 의무 이행

- 본 과제 선정 시, 산출되는 생명자원(생물자원 및 생명정보)을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개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33조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·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

※ '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'(20.5.)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